

韓半島 平和保障의 制度的 方案

(第 30 次 유엔總會 對策分析)

1975. 8.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5. 8.

研究責任者 中央大學校 禹 在 升

目 次

I. 緒 論	3
II. 韓國과 유엔과의 關係	9
III. 第 28 次 유엔 總會	17
IV. 第 29 次 유엔 總會에서의 韓國問題 討議 評價	19
V. 유엔에서의 勢力構造分析	35
VI. 第 30 次 總會 決議案 잇슈別分析	47
1. 유엔旗下의 駐韓外軍撤収와 유엔軍司 解体問題	50
2. 休戰協定과 平和協定問題	55
3. 軍縮問題	58
VII. 맺 는 말	62

... 1942 ...
... 1943 ...
... 1944 ...
... 1945 ...
... 1946 ...
... 1947 ...
... 1948 ...
... 1949 ...
... 1950 ...
... 1951 ...
... 1952 ...
... 1953 ...
... 1954 ...
... 1955 ...
... 1956 ...
... 1957 ...
... 1958 ...
... 1959 ...
... 1960 ...
... 1961 ...
... 1962 ...
... 1963 ...
... 1964 ...
... 1965 ...
... 1966 ...
... 1967 ...
... 1968 ...
... 1969 ...
... 1970 ...
... 1971 ...
... 1972 ...
... 1973 ...
... 1974 ...
... 1975 ...
... 1976 ...
... 1977 ...
... 1978 ...
... 1979 ...
... 1980 ...
... 1981 ...
... 1982 ...
... 1983 ...
... 1984 ...
... 1985 ...
... 1986 ...
... 1987 ...
... 1988 ...
... 1989 ...
... 1990 ...
... 1991 ...
... 1992 ...
... 1993 ...
... 1994 ...
... 1995 ...
... 1996 ...
... 1997 ...
... 1998 ...
... 1999 ...
... 2000 ...
... 2001 ...
... 2002 ...
... 2003 ...
... 2004 ...
... 2005 ...
... 2006 ...
... 2007 ...
... 2008 ...
... 2009 ...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2018 ...
... 2019 ...
... 2020 ...
... 2021 ...
... 2022 ...
... 2023 ...
... 2024 ...
... 2025 ...

I. 緒 論

韓國은 1973年 6月23日을 기하여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관한 特別宣言을 發表함으로써 外交政策 七個 基本方向을 確定하였다.

統一에의 民族的 意志를 再闡明하고 相互內政不干渉과 不可侵을 바탕으로 한 韓半島의 平和定着이 平和統一에의 必須條件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北韓과는 國際機構에 共同으로 參與도하고 「유엔」에 同時招請이나 同時加入마저도 反對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심지어 共產圈의 諸國과도 相互開放 및 關係改善을 促求하였다. 勿論, 自由友邦과의 既存紐帶를 더욱 強化할 것이며 南北間의 對話는 誠實과 忍耐으로써 繼續해 나가겠다는 決意를 表明하였다.

이 特別宣言으로 韓國의 外交政策方向은 劃期的인 轉換을 하였으나 具體적으로 「유엔」政策面에서 如何이 表現되느냐 하는 問題에는 內外的 關心事가 아닐 수 없었다. 特別宣言 第5項에는 「유엔」政策의 一部가 明示되어 있다. 유엔總會에 南北同時招請이나 同時加入을 反對하지 않는다는 受動的이고 消極的인 表現을 하였다.

그러나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서다.

6.23 外交宣言에서 韓半島와 「유엔」에 관한 實質的인 問題는 전혀 밝혀있지 않다. 統韓方案에 대한 「유엔」의 役割이며

UNCURK (유엔韓國統一復興委員國) 問題, 「유엔」軍司 및 休戰協定問題 등에 관해서는 言及이 없었다. 오직 節次上의 問題로 南北同時招請이나 同時加入의 不反對를 闡明하였다. 이 事實만으로도 그

意義는 크다.

南北同時招請을 受諾한다고 할때 北韓에 대한 지금까지의 條件附招請案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無條件 招請에 同意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至今까지의 條件이었던 「유엔」의 權威와 權能」을 認定한다는 事前確認을 要求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韓半島問題에 관한 「유엔」의 「權威와 權能」을 否定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나아가서 南北이 유엔에 同時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는 것은 北韓과는 같은 條件이나 같은 地位에서 競爭할 수 있다는 韓國의 立場을 밝힌 것이다. ① 결국 相互同等한 法的 地位를 認識하는 것이나 두개의 國家로 承認하지 않고 다만 現在 北韓地域을 事實上 統治하고 있는 政權이라고 認定한다. 적어도 7.4 南北共同聲明이나 6.23 統一外交特別宣言에서는 大韓民國의 法統性問題가 不明確해질 素地는 없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前述한 바와 같이 1973年 가을 第28次 유엔總會에서는 合意決議案(Consensus agreement)이 통과되어 7.4 南北 共同聲明의 平和統一 三大原則을 再確認하고 南北對話의 계속을 促求하는 同時에, 그동안 北韓共產側의 攻擊對象이었던 「UNCURK」를 自進解体 하였다. 北韓은 第28次 유엔總會에 처음으로 「움저바」로 등장하는 등 그들의 外交的 劣勢를 만회하면서 「UNCURK」解体의 第一次의 유엔高地를 占領한 셈이다. 그러나 大韓民國으로서의 그때의 國際情勢下에서 이미 기정 事實같이 되어 버린 餘件을 우리 外交의 柔軟性(Flexibility)을 發揮할 수 있

는 契機로 삼았다는 점에서 對外的으로 반영되는 意義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第29次 유엔總회에서 韓國의 圧倒的 勝利는 이미 그 기틀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본다. 이때의 西方側 決議案은 첫째 南北對話의 계속을 促求하는 第28次 「유엔」總회 合意決意案을 再確認하고 둘째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目的으로 韓國休戰協定을 계속 維持할 것을 감안하여 장차 적당한 時期에 (In due course) 安全保障理事會는 当事者와의 協議下에 「유엔」軍司의 解体問題까지도 討議할 것을 希望한다고 하여 61:42:32로 通過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알제리아」決議案인 “유엔旗幟下의 外軍撤収”案도 48:48:38로 可否 同數가 되어 總會議事規則 第133項에 의거 否決되었다. 이 表決의 結果가 이번 第30次 유엔總회에 如何이 반영될 것인지 매우 주목된다. 특히 1975年에 이르러 急變한 東南亞事態等을 감안할때 우리에게 큰 試練이며 挑戰이 아닐 수 없다. 單純한 票數로 計算할 때 일단 不利한 느낌이다.

韓國은 이와같은 情勢變化에 매우 민감하게 그리고 迅速하게 對処하고 있다. 우선 北韓에 대한 유엔外交에서 先制權을 잡기위해 金東祚外務部長官은 今年 6月27日 聲明을 發表하여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위해 休戰協定을 계속 維持시키는 條件下에 유엔軍司令部를 解体할 用意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闡明하였다.

1. 작년 第 29 次 유엔총회는 韓國問題에 관하여 決議 3,333 号를 採択하여 安全保障 理事會로 하여금 休戰協定の 維持代案과 함께 유엔軍司令部의 解体를 包含한 韓國問題의 諸般事項에 관하여 直接 關係當事者와의 協議下에 적절한 時期에 審議할 것을 希望하였다.

2. 政府는 이러한 유엔총회 決議에 부응하고 韓半島에서의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기 위하여 駐韓 유엔軍司令官 指名의 責任을 받은 美國政府와 協議끝에 休戰協定維持方案을 강구하는 條件下에 유엔軍 司令部를 終了하기로 合意하였다.

3. 美國政府는 6月27日字 安全保障理事會 議長앞 公翰을 通하여 美國政府가 유엔軍司令部를 終了할 용의가 있으며 아울러 現在 유엔軍司令官이 遂行하고 있는 休戰協定の 履行責任을 繼承할 後繼者로서 韓·美兩國軍 將校를 指名할 용의가 있음을 通告하였다.

이 公翰은 또 休戰協定の 他方當事者들이 同協定 効力の 繼續維持에 事前 合意한다면 1976年 1月1日字로 유엔軍司令部를 解体 하겠다고 밝혔다.

4. 유엔軍司令部 問題에 관한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韓半島平和 安定의 維持에 蹉跌을 招來함이 없이 유엔軍司令部 問題를 正연히 처리할 수 있는 가장 現實的이며 建設的인 提議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大韓民國政府는 美國政府와 함께 休戰協定の 他方當事者들과

雙方이 合意하는 時間과 場所에서 이 問題를 協議할 用意가 있으며 安全保障理事會 理事國들과도 그들이 원한다면 協議할 用意가 있다.

金長官의 6·27 聲明內容은 그동안 우리 政府가 유엔軍司令部 解體問題에 관하여 누차 밝힌 기정方針을 반영한 것으로 그것은 첫째, 이러한 우리 立場이 第29次 유엔總會 決議 3,333 號에 表示된 유엔 會員國의 與望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고 둘째, 現下 韓半島情勢에 비추어 休戰協定の 계속 維持야 말로 韓半島平和安定의 維持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고 유엔軍司令部 問題를 整然히 解決할 수 있는 要件이며 셋째로 北傀에 挑發的 戰爭準備를 포기토록 促求함으로써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韓半島의 平和를 꼭 維持해야 한다는 우리의 決意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6·27 聲明은 그동안 南北對話, 7·4 共同聲明, 6·23 宣言, 南北不可侵協定 提議等 韓半島平和定着을 위한 方案을 꾸준히 先導해온 우리 政府가 急變하는 周辺情勢下에서 보다 積極的인 姿勢로 韓半島에 平和를 維持 定着시키고 韓國問題의 平和的解決을 위한 有利한 條件을 造成하기 위하여 취한 또 하나의 決斷인 것이다.

今年 유엔總會에서의 가장 重要한 「잇슈」는 두말할 나위없이 유엔軍 司令部의 解體問題이다. 今年 본 印支事態로 인한 「크메르」와 월남 그리고 「라오스」가 共產化됨에 따라 이 事實에 힘입은 北傀의 金日成集團은 그들의 南侵 赤化野慾이 어느때 보다

鼓舞되어 韓半島의 緊張은 일촉즉발의 戰爭危險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긴박한 事情下에서의 유엔軍司令部 解体問題는 韓國의 安保에 대한 크나큰 도전이며 平和 定着을 爲한 制度的인 保障이 없이 一方的인 유엔軍司令部 解体는 韓國의 安保에 큰 危脅이 된다는 事實을 감안할때 이번 유엔總會의 重要性을 再言을 要치 않는다.

勿論 現實的으로 말해서 유엔軍司令部가 解体된다고해도 그것이 곧 駐韓 美軍의 地位에 影響을 주는것이 아니므로 駐韓 美軍의 平和維持的 機能이나 戰爭 억지력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時点에서 韓半島와 유엔 그리고 韓國의 統一과 유엔과의 關係나 지금까지의 問題點 그리고 특히 유엔軍司令部의 解体問題와 關聯된 여러가지 事項을 分析 整理 해 보고 앞으로의 유엔과 韓國과의 關係를 새로이 점검해 봄으로써 우리의 유엔觀을 좀더 現實的인 次元에서 再評價해 볼 必要가 있다.

II. 韓國과 유엔과의 關係

第2次 世界大戰이 聯合軍의 勝利로 종지부를 찍자 二次大戰 도 중 發表된 「카이로」宣言이나 「포츠담」宣言等 國際的 協約에 의 해 韓國의 獨立이 保障을 받게 되었으나 實際로 解放된 韓民族은 그 領土가 兩分되어 民族은 分裂되고 國土는 兩斷되는 運命에 처 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처지를 바꾸어 民族的 宿願인 統一을 이 룩하기 위해서 온갖 努力이 있었으나 韓半島의 單一 國家는 결국 이룩되지 못하고 韓國의 獨立問題가 國際聯合舞臺로 옮기게 되는데는 여러가지의 曠절이 있는 것이다.

日本의 항복으로 駐韓 日本軍의 武裝解除를 위하여 南北韓으로 進駐했던 美國과 蘇聯은 1945年 12月 美·英·蘇 三國의 「모 스코바」會議에서 韓國을 獨立시키기로 合意했다. 이 合意事項을 履行키위해 美國과 蘇聯의 共同委員會가 召集되고 이 委員會는 韓 國 臨時政府 樹立方法을 決定하기 위하여 韓國의 民主政黨과 協議 하도록 規定하였다.

그러나 이 美·蘇 共同委員會는 즉 蘇聯과 協議下에 韓國의 獨立問題를 解決해 보려고 하는 美國의 끈질긴 努力에도 불구하고 三年間이란 긴 세월을 낭비했을 뿐 결국 韓國에 獨立政府를 樹立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友邦들의 끈질긴 努力은 결 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들은 過渡政府를 樹立하는 問題에 對하여 協議를 해야 할 韓國의 代表的 政黨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問題등을 놓고 蘇聯이 韓국의 信託統治를 贊成하는 共產主義의 政黨만을 協議 對象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고집함으로써 모든 政黨을 協議 對象으로 해야 한다는 美國의 주장은 根本的인 차이가 있어 전혀 妥協의 可能性은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美·蘇 共同委員會는 蘇聯의 非妥協的이며 時間만을 지연시키려는 기도에 부딪혀 애당초부터 韓國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機構가 되지 못하였다. 어쨌든 聯合軍團의 國際協約으로 누차 약속되었던 韓국의 獨立問題가 美·蘇兩國의 意見의 不一致로 因해 解決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게되자 美國은 1947年 9月 17日 유엔 代表團을 通하여 韓國 獨立問題가 第2次 UN總회의 議題에 包含될 것을 要請하게 된 것이다. 즉 韓國 獨立의 問題를 美蘇間의 問題에서 國際聯合의 問題로 이관할 것을 要請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하여 韓國問題가 유엔으로 이관되었으나 共產 障營에서는 처음부터 韓國問題에 대해 유엔이 관여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즉 유엔의 權威와 權能을 認定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같은 주장은 두가지 理由와 根拠를 든다고 한다. 첫째, 韓國問題를 第二次 大戰後의 戰後 處理問題로서 유엔憲章 第107條에 依拠해서 유엔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第107條 規定에는 “本憲章의 署名國의 適用이었던 國家에 關하여 該行動에 對하여 責任있는 政府가 第2次 大戰의 結果로서 취한 或은 인정한 行動을 無効로 하거나 또는 排除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規定은 嚴格히 말해서 韓半島問題에는 上관이 없다.
이것은 第2次 世界大戰中 適用이었던 國家에 관한 規定이므로 韓國은 그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또한 共產側은 韓民族의 統一問題는 國內問題로서 外勢의 干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엔憲章 第二條 7項에 規定된 會員國의 權利라고 한다. 二條 7項에는 다음과 같이 規定되어 있다. “本 憲章의 如何한 規定도 本質上 어떤 國家의 國內管割權內에 속하는 事項에 干涉하는 權限을 國際聯合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여사한 事項을 本憲章에 의하여 解決하도록 부탁할 것을 加盟國에게 要求하는 것은 아니다. 단, 이 原則은 第七章에 의한 強制的 措置의 適用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로 되어있다. 韓半島 統一問題 또는 韓半島 平和 및 安全問題가 周邊 強大國의 干預가 없었던 순수한 國內問題로 본다는 것은 現實적으로 不可能하다. 6·25 事變 같은 엄청난 民族的 悲극을 雙方이 外勢의 干預없이 南北의 對決로 終結된 것도 아니다. 이와같은 때는 對內的 問題로만 말할 수 없다는 事實만은 明白하다. 이 問題에 對해서 더 자세하게 論評할 기회가 있으리라.

韓國問題에 對해서 美國代表團의 要請에 따라 國際聯合 總會는 韓國問題를 審議한 끝에 같은해 11月14日 韓半島에 統一政府를 樹立하기 위하여 實施할 總選舉를 감시하도록 國際聯合 臨時 委員會 設置를 決議했다. 그러나 蘇聯은 앞서 說明한 그대로 美國이 韓國問題를 國際聯合에 依賴하는것 자체부터 반대하는 것뿐 아니라

南北韓 自由選舉 實施도 거부하였으며 이를 감시할 委員團의 北韓 地域 出入마저도 거부하였다.

그러므로 이 委員團은 國際聯合이 그들에게 부여한 任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를 總會에 報告하고 總會費 權限을 위임받는 小總會가 이 問題를 審議한 結果 委員團이 接近 추리할 수 있는 地域內에서 만이라도 自由選舉를 實施하도록 다음해인 1948年 2月 26日 決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小總會의 決議에 따라 1948年 5月 10日 國際聯合의 감시 아래 南韓에서만의 自由選舉가 實施되고 198名의 国会議員이 選出되었고 이어 5月 31日에는 制憲国会를 構成하고 7月 17日에 大韓民國 憲法을 제정 공포하여 8月 15日에는 드디어 大韓民國의 獨立을 세계만방에 선포하게 되었다. 韓國은 政府樹立을 선포한 이래 國家의 기틀을 바로 잡고자 努力을 해왔다. 그러나 그 당시 國土의 兩斷과 이로 인한 「이데올로기」의 對立등이 주는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等이 建國初期의 新生國家로서 너무나 어려운 큰 짐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機會를 틈타 膨脹主義的인 蘇聯 共產主義를 등에 업은 北韓은 韓半島의 赤化를 武力으로 達成코자 1950年 6月 25日 不法 南侵을 감행하여 韓國動亂이 발발하였다. 韓國動亂이 發勃하자 美國의 要請으로 召集될 國際聯合 安全保障理事會는 敵對行爲를 즉각 中止할 것과 北韓軍이 삼팔선 以北으로 즉각 撤収할 것을 要求하고 이러한 努力을 하는 國際聯合에 對하여 加盟國들이 協助하고 北韓에 對해서 援助를 中止할 것을 各 會員國에 要請하였다.

그러나 北韓이 國際聯合의 要求를 거침하고 南侵을 계속함에 따라 安全保障理事會는 6月27日 國際聯合加盟國들에 北韓의 軍事的 攻撃을 격퇴하고 國際平和와 安全은 回復하기 위하여 必要한 援助를 大韓民國에 제공하기를 勸告하였다.

이 勸告에 따라 花란, 「룩셈부르크」, 불란서, 「벨기에」,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 美國, 英國, 「필리핀」, 「이디오피아」, 「터키」, 「카나다」, 태국, 「콜롬비아」, 南阿聯邦, 「그리스」등 16個國이 같은해 7月5日 安全保障理事會 兵力을 派遣하고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웨이」 및 「스웨덴」등 5個國은 醫療班을 派遣하는등 韓國에 對한 不法侵略勢力을 격퇴하기 위해 國際聯合은 集團的 援助措置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援助措置로 因하여 韓國은 北傀에 의한 侵略行爲를 격퇴할 수 있었던 것이나, 또한 國際聯合 總會는 1950年 10月7日 全韓國에 獨立된 民主政府를 수립하고 戰爭의 災해로 부터 韓國을 구호하고 復興시키기 위하여 「오스트렐리아」, 「칠레」, 花란, 「파키스탄」, 「필리핀」, 「타일랜드」 및 「터키」등 7個國으로 구성된 國際聯合 韓國統一 復興委員團(UNCURK)를 設置하도록 決議하고 이해 11月1日에는 戰亂의 피해를 입는 韓國을 구원하고 破壞된 經濟를 復興시키기 위한 特別機關으로 國際聯合 韓國再建團(UNKRA)를 創設할 것을 決議한다.

國際聯合은 韓國動亂이 발발하자 迅速한 措置로 北傀의 侵略을 저지하는데는 成功했으나 中共의 介入으로 韓國의 統一을 完遂하는

데는 失敗하고 말았으며 1951年 봄부터 제기된 休戰協定問題가 2年以上이나 끌다가 1953年 7月 27日 타결되므로써 休戰協定이 체결되고 드디어 砲聲이 멎게된 것이다.

이때 統一이 없는 休戰을 反對한다는 뜻에서 韓國은 休戰協定에 署名할 것을 거부하여 「유엔」軍 司領官을 一方으로 하고 他方에는 北傀 人民軍司令官과 中共 자위군 司令官을 他方으로 해서 休戰協定이 締結된 것이다.

休戰이 成立된 後 休戰協定 第 60 項에 따른 政治會談이 1954年 4月 26日부터 「제네바」에서 開催되어 韓國統一問題를 다루었으나 共產側이 韓國에서의 國際聯合의 役割을 부인하는등 非民主的이고 非現實的인 주장만을 반복하므로써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채 6月에는 드디어 결렬되고 말았다. 「제네바」會議에서 韓國代表가 제시한 統一方案은 이른바 國際聯合 方式에 의한 韓國問題解決이 그 주축이 되고있다. 즉 韓國問題 解決에 關해서 「유엔」은 充分하고도 適當한 權限이 있다는 事實을 認定하고 南北韓 人口比例 代表制에 의한 自由選舉의 實施, 統一獨立 民主韓國이 成立되어 「유엔」의 使命이 完遂될때 까지 「유엔」軍이 계속 駐屯을 必要로 한다는 것이었다. 國際聯合 總會는 1954年 12月 11日 「제네바」政治會談에 關한 報告서를 承認하고 韓國에 있어서 國際聯合의 目的은 平和的 方法에 依하여 統一獨立 民主韓國은 實現하는데 있다는 事實을 再確認하고 1955年 11月 29日에 國際聯合 方式에 따라 韓國問題의 解決을 계속 促求할 의도를 再確認하여 그후의

總회가 開催될 때마다 有似한 決議案이 締結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大韓民國이 國際聯合의 축복아래 탄생한 후 韓國의 獨立과 더불어 國家發展에 기여한 「유엔」의 業績을 높히 評價한다. 특히 6.25 韓國動亂으로 말미암아 北傀의 南侵을 그리고 赤化野慾을 힘으로써 저지하고 大韓民國의 國家安保의 간성이 되어준 「유엔」軍의 業績을 부인할 사람은 北傀共産主義者들과 같은 反民族的 괴뢰집단들 以外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다. 韓國이 自主獨立을 宣言하자 그해 「유엔」總회에서는 大韓民國을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合法 政府로 決議 宣言하였으며 따라서 韓半島의 問題가 「유엔」에서 學論될 때 唯一合法政府로서의 參與를 要求해 왔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韓國代表들 만이 單獨 招請되어 大韓民國의 統一政策을 피력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60年代에 접어들면서 國際情勢는 漸次로 變化하기 始作하여 「반동」會議를 기점으로한 世界 非同盟 第3勢力圈이 形成되고 「A.A블럭」에서의 新生國이 속속 「유엔」에 가입하므로써 그 勢力이 매년 비대해 짐에 따라 「유엔」에서의 勢力 均衡은 깨어지고 大韓民國의 單獨招請案이 큰 挑戰에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美國은 속칭 「스티븐슨」案인 條件附 南北韓同時招請案에 同意하기에 이르렀으며 美國은 北傀가 그때까지 否定해 오던 韓國問題에 對한 「유엔」의 權能과 權威를 認定한다는 條件으로 同時 招請案에 同意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다 잘아는대로 北傀는 끝까지 「유엔」이 韓半島問題에 參與할 수 없다는 態度를 견지하

여 條件附 同時招請案을 거부해 왔다. 더우기 1960年代末에는 「유엔」加盟國의 數가 급격하게 늘어나 西歐陣營의 提案이 非同盟 第3勢力의 數的인 우위에 늘려 韓半島問題가 「유엔」總會에서의 争点이 되었을때 이것을 压倒할 수 있는 餘件이 매우 流動的이어 서 우리는 韓半島問題의 裁量상점 政策이나 구스程 政策들을 구사 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Nixon」의 對中共政策이 一代轉換을 가져옴에 따라서 中共은 自由中國, 台灣을 「유엔」에서 축출하는데 成功하여 國際聯合 會員國이 되었음은 勿論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席까지도 점 거하므로써 5代強國의 隊列에 參與하여 「유엔」政治上 막강한 影響力을 발휘하기에 이르렀다. 北傀는 「유엔」에서의 이와같은 中共 「부음」을 힘입어 그들의 「유엔」무대에서의 적극 外交의 기 틀을 구축하는데 成功하였다. 그 結果 北傀는 世界保健機構(WHO) 나 國際聯合 貿易開發會議(UNCTAD) 등에 加入하므로써 自動的으로 「유엔」本部에서 「유엔」總會의 「Observer」지위를 確保하고 드 디어 1973年 第28次 總會에서는 그들이 大韓民國 代表와 나란히 의 總會에 參席하므로써 「유엔」軍 司令部와 「언커크」를 해체하 도록 강력히 주장해 왔던것이다. 大韓民國은 이와같은 國際趨 勢를 감안하여 1973年 6.23 宣言을 發表하고 北傀가 「유엔」舞台나 國際舞臺에서 韓國과 同時에 參與하는 것은 反對하지 않으며 나아 가서는 「유엔」에 南北이 同時에 加入하므로써 「유엔」테두리 내 에서 韓半島의 對話와 平和를 定着시키는데 相互協調 功獻할 것을 바란다는 뜻을 宣言하였다.

Ⅲ. 28次 UN 總會

6·23 宣言이 發表되자 「유엔」總會에서의 韓國의 外交政策은 좀 더 具體的인 指針이 내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第28次 「유엔」總會는 우리가 좀 더 能動的으로 對策을 講究할 수 있게 되었다.

6·23 宣言의 精神에 입각해서 그리고 平和自主統一의 原則과 民族大同團結이란 精神을 宣言한 南北 7·4 共同聲明을 기초로해서 처음으로 南北韓이 나란히 「UN」總會에 參席하게 되었다. 이것은 韓國과 「유엔」과의 關係에 있어서 一代 轉換이 아닐 수 없다. 韓國側이 이미 예측한 그대로 共産側은 「언커크」해체와 「유엔」軍 司令部 해체 등 諸問題를 가지고 韓國의 立場에 크게 도전해 왔으나 우리는 이와같은 도전에 유연하게 대처할 姿勢를 6·23 宣言을 통해 이미 그 方向을 밝힌바 있었다. 韓國은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며 南北韓의 힘의 均衡을 破壞한 「유엔」軍司의 解体는 反對한다는 積極的인 姿勢를 취하면서 그러나 事實上 아무런 實効을 거두지 못한채 持續되어온 「언커크」에 關해서는 그의 持續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現實的인 妥協의 可能性을 否定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結果 28次 總會에서는 「언커크」는 解体되었으나 우리의 立場과 政策이 合理的인 政策이란 評이 내려 「유엔」軍司 問題에 關해서는 그 地位의 變動이 없었으며 同時에 南北이 各各 제의한 決議案을 다같이 덮어 두고 「콘센서스」合意(Consensus agree-

ment) 形式을 採択하였다. 이 만장일치 合意決議案에는 南北 7.4 共同声明에 나타난 3大統一原則 即, 自主統一 그리고 平和統一의 原則과 民族大同團結의 原則에 立脚하여 南北이 對話를 계속할 것과 또한 多邊적 交流와 協力을 強化함으로써 韓民族의 統一을 앞당길 것을 바란다는 內容의 合意가 成立되고 이로써 南北이 表決로서 對決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契機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 外交政策 担当者들의 曠후 交渉의 일대 成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昨年 29次 「유엔」總會에서는 北傀는 또 다시 「유엔」軍司令部의 解体問題를 들고 나와 「유엔」기발 아래의 駐韓外國軍의 撤収를 要求하는 決議案을 냈으며 韓國은 이 決議案에 맞서기 위해 28次總會의 韓國問題 萬掌一致 決議案의 實踐과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의 긴급한 必要性을 強調하는 議題로 提出하였다.

北傀는 「유엔」기 아래의 모든 駐韓外國軍의 韓國에 대한 내정간섭을 그만두고 韓國에서 撤収하는 것이 韓國의 独立的인 平和統一 達成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第29次 「유엔」總會의 討論過程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세히 說明하도록 하겠다.

Ⅳ. 第29次 U N 總會에서의 韓國 問題 討議 評價

今年の 第三十次 U N 總會를 정확히 展望하기 爲해서는, 다른 여러가지 접근 方法과 함께 昨年 第二十九次 U N 總會時 討議된 韓國 問題에 關係 세밀히 分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금은 지난해 U N 總會時에 韓國 問題에 關한 議題가 어떻게 제출되고 채택 되었으며 그에 따르는 強大國의 움직임들은 評價하고 우리의 對策은 무엇이였으며 그 결과가 어떠한 樣狀으로 나타났는지를 分析함으로서 그 결과가 今年 第三十次 U N 總會時에 어떠한 영향을 줄것인가를 짐치 보기로 한다.

어느 해에도 마찬가지로 三伏 더위가 지나고 9月이 다가오면, 紙上에는 심심치 않게 닥아올 U N 總會에서의 韓國問題 討議가 어떻게 될 것인지 識者들의 關心을 모으기 시작한다. 특히 中共과 北傀가 그들의 모습을 總會場 주변에 나타내기 시작할때 부터는 韓國외교는 더욱 긴박감을 주기 때문이다.

1974年 U N 總會에 對한 國民의 관심은 例年보다도 조금 일찌기 나타났다. 이것은 8.15 大統領 저격사건이 일어난 하루뒤인 8月16日자로 北傀側은 中共과 蘇聯 및 「알제리아」등 32개국의 共同 제안으로 「U N 깃발下의 韓國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外國軍의 撤取라는 제목의 議題를 國際聯合 事務局에 제출한 까닭이다.

그들은 의사 案件提出에 있어서 先制的 主導權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國際聯合事務局은 그 의제를 보충의제로 접수하여 U N 文書번호 A 9703으로 배포하게 되었다. 北傀側은 그들의 제안 설명에서 韓國의 國內問題에 대한 外軍의 계속적인 軍事的 介入은 韓國의 平和的 再統一을 저해하고 南北對話를 교착상태에 빠지게 했다고 비난하였다.

U N 總會에 의제를 제출하게 되면 正常的으로 말할때 總會 개막 2個月前까지 事務局에 提出할 수 있는 假議題와 開幕 1個月前까지 제출할 수 있는 보충의제의 2가지로 分類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외에 긴급 방안으로 전기 기간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는 추가 議題가 있으나 이때에는 그 議題의 긴급성이 總會 出席 過半數 이상의 支持로서 認定을 받아야 하므로 보통으로 사용되는 議題 提出 方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北傀가 二十九次 U N 總會에서 보충의제로서 韓國問題를 제기한 것은 그들의 의제에 대해 對抗할 수 있는 對抗議題를 韓國側이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않기 위한 일종의 기습 작전으로 71年度 그해 8月23日字로 外軍撤收案 제출과 같은 手法임을 알 수 있다.

北傀側의 이와같은 기습 手法과 함께 韓國問題를 U N에 다시 제기하게 된것은 1973年度의 第二十八次 U N 總會가 「언커크」 解体와 함께 「韓國問題는 7.4 共同聲明의 정신에 따라 南北 韓 당사자의 平和的 協力에 의해 解決하도록」萬掌一致로 決議한

관계상 北傀로서는 韓國問題를 어떻게 하면 UN에서 다시 유리한 조건으로 討議될 수 있을 것인지 그 評價가 용의하지 않았으나 石油危機 이래의 西方側 分裂 때문에 西方진영의 단합적 對韓 지원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을뿐 아니라 그당시 韓國 國內問題에 對한 美·日等 友邦國의 輿論惡化가 韓國의 國際地位에 극히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그당시 「키프로스」사태가 악화하여 「터키」軍 「키프로스」도 상륙작전이 國際輿論에 否定的 輿論을 주고 있었던 시점을 이용하여 그 기회를 포착 편승하여 韓半島에서의 外軍撤收를 관철시켜 보자는 저의에서 나온것으로 풀이될 수 있고 또한 1973年度 第二十八次 總會에 提出했던 「韓國의 자주 平和統一을 促進하기 위한 有利한 여건조성」이라는 의제와는 달리 「UN旗下의 韓國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外軍의 撤收」라는 의제명의 단도직입식 外軍撤收案을 提出한 것도 여기에 기인한 것으로 評價된다.

北傀가 일단 外軍撤收案을 第二十九次 UN總會에 提出하게 되자 그에 따르는 節次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總會開催 벽두에 열리는 總會 運營委員會에서의 의제 채택 및 의제 배정 절차와 同 運營委員會의 결정에 對한 總會承認 節次가 남아있었으며 둘째 의제로서 채택되었을 경우 總會 第一 政治委員會에서의 의제에 對한 討議 및 표결 節次가 남아 있었고 끝으로 同 第一 政治委員會에서 可決 통과 되었을 경우 同議題에 對한 總會 본회의의 最終的 承認 및 表決 節次가 있다.

이와같은 節次에 앞서 韓國으로서는 이에 対応할 수 있는 강력
한 対応策이 불가피해졌다. 만일 北傀側의 案이 運營委員會를 통
과하고 일단 總會 第一 政治委員會에서 토의하게 될 경우 그 당
시의 國際 狀況으로 보아 外軍은 無條件 撤收해야 된다는 주장이
곧 호응을 불러 일으킬 可能性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韓國은
이것을 저지할 방안을 講究해야만 했다. 따라서 北傀側의 案이
단독으로 의제로 채택되어 독주하는 일이 없도록 그에 対応하는
韓國側 의제도 즉각 事務局에 제출할 必要가 있었으며 運營委員會
에서 韓國問題 채택 與否를 둘러싼 討議가 진행될때 兩側案이 同
시에 의제로 채택되거나 아니면 의제기각 또는 의제토의 연기 되
도록하는 토의 崩쇄 戰略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蘇聯은 UN軍 司令部가 解体되면 大韓民國
과의 수교도 可能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여 國內外의 관심을
집중하기에 이르렀다. 그해 8月28日 UN에서 유포된 蘇聯 外
交 소식통에 의하면 韓半島問題에 對한 蘇聯의 第二十九次 UN總
회의 政策은 UN軍 司令部를 解体시키되 美軍의 韓國 駐屯은 개
의치 않는다고 하였으며 UN軍 司令部가 解体된 後에는 大韓民國
과의 수교도 可能할 것이라는 見解도 밝혔다고 하였다. 즉 현지
蘇聯 外交觀들은 記者會見에서 UN軍 司令部가 解体된다면은 그後
美軍의 韓國駐屯은 全的으로 雙務 協定上의 問題이므로 蘇聯으로서
는 이 問題에 關해서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UN軍 司
令部の 解体가 有은後 蘇聯은 大韓民國과의 수교를 可能한 것으로

보는가의 記者質問에 對해 肯定的으로 答復하였다는 소식이 지상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報道는 具體적으로 누가 어떤 狀況下에서 發言한 것인지가 分明치 않아 그 發言의 正確성과 比重 및 責任性を 論할 수는 없었다. 만일 그 發言이 蘇聯側 外交官의 責任있는 것이라고 하였더라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問題가 많았으며 北傀側 決議案을 可決시키기 위한 與件 造成策略의 일환일 可能性이 짙어 蘇聯側의 眞意를 判斷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그당시 蘇聯의 對韓 態度를 보면 처음 7.4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된 以後 매우 好轉되어 韓國에 對한 呼稱이 變했으며 73年 8月에는 金東祚, 「도브리날」駐美大使의 面담까지 進전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南北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그들의 對韓 非難은 더욱 激化되어 韓國과는 전혀 關係 改善이 있을 수 없다는 事實을 明白히 하고 韓, 日에 對한 非難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蘇聯의 對韓政策은 情勢에 極히 敏感하였으며 不安定하다. 南北會談이 事實상 결렬된 以後 蘇聯이 對韓非難을 격화시키고 對北傀 성원을 적극화 한것도 결국 北傀의 체면을 세워주고 中, 蘇 對立을 감안하여 北傀로 하여금 親蘇 勢力으로 密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點으로 풀이할 수 있다.

韓國으로서는 蘇聯의 眞意가 무엇이든간에 韓國 안보와 直결되는 國際的 制度的 保障인 UN軍司令部를 解体한다는 것은 極히 危險

한 생각이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볼때 U N 軍司令部가 결국 解体되어야 할 運命에 있다면 그리고 韓國과 蘇聯과의 수교가 6.23 선언의 精神이며 韓國의 U N 加入을 促進시킬 수 있고 北傀를 牽制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면 對蘇 접근을 檢討해 볼 必要는 있는 것이다.

蘇聯으로서는 中, 蘇紛爭의 側面에서 볼때 二十八次 U N 總회가 韓國問題에 있어서 中共 主導形이었다는 인상을 불식할 必要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蘇聯의 主導權 장악을 위한 움직임은 오히려 北傀의 對美 접촉등 不可侵協定 제의를 現實問題로 크게 부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韓國의 各별한 경계가 必要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蘇聯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北傀側은 中共, 蘇聯 및 「알제리아」등 32 個國의 共同 提案을 통과시키기 위해 그들의 外交活動을 적극 展開하였으며 共同 제안국의 數도 크게 늘리는데 最善을 다 하였다. 한편 大韓民國은 北傀側의 議題의 不當性을 說明하는 대신에 우리의 立場을 說明하는等 적극적인 外交活動을 벌였으며 U N 總회에 대비한 戰略合議를 開催하는等 北傀側의 提案을 봉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다.

그러나 國際聯合을 둘러싼 정세는 國際的인 對韓 批判 輿論의 擴大와 友邦諸國의 對韓 支持度의 弱화 추세 그리고 第三世界의 反西方的 性向의 강화등으로 韓國外交는 매우 不利한 狀況으로 發展되었으니 이러한 不利한 情勢를 극복하고 北傀의 도전에 效果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이 무엇보다도 긴급히 요청되었다.

北傀의 共産側案의 共同提案國은 亞洲에서 中共과 몽고 그리고 中東에서 「알제리아」와 애굽 等 8 個國, 「아프리카」에서 「탄자니아」, 「잠비아」等 12 個國 美洲에서는 「큐바」, 西歐에서는 「말타」, 그리고 東歐 10 個國이 共同 提案國이 되었는데 「세네갈」은 8 月 22 日 字로, 그리고 「에집트」는 8 月 27 日 字로 共同 提案國으로 가담하여 32 個國이 34 個國이 되었다. 1973 年 第三十八次 總會에서는 北傀側 共同 提案國의 數가 35 個國이었으며 그중 「시에라레온」과 「자이테」가 가담하지 않았으며 二十九次 總會때 새로이 가담한 나라는 「세네갈」이었다.

그러나 北傀는 의안제출에 따르는 決議案을 8 月末까지 제출하지 못한 관계로 결국 西方側 決議案의 先制에 敗北당하게 된다.

韓國은 美, 英, 日 그리고 태국, 「필리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等 8 個 友邦諸國을 統合하여 北傀側에 대비 할 수 있는 戰略會議을 8 月中에 세번이나 開催하여 運營 委員會 構成에 關한 檢討를 비롯하여 獨自적으로 西方側 안건을 제출하는데 대한 得失與否를 檢討하였으며 나아가서는 友邦國의 決議案을 作成하기 위한 作業準備等을 協議한바 있다.

이 戰略會議는 西獨과 그리고 中南美로 부터 一個國이 同회에 參加할것을 권고키로 결정한 바 있다.

가장 重要한 問題는 中立國側의 動向이라고 하겠다. 中立側 대다수 國家는 北傀側의 補充 議題 提出에 對한 韓國의 立場을 說明할때 部分的으로 同意, 首肯하면서도 非同盟 第三勢力權을 意識하

고 原則的으로 外國軍의 駐屯에는 反對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國際 聯合軍 解体問題에 對해서는 일단 呼應을 하는 듯한 경향을 보였다. 이들 국가중에는 北歐의 「덴마크」, 「핀란드」, 「노웨이」, 「아일랜드」등을 비롯해서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어퍼볼타」, 「기니」, 「비사우」, 「페루」등이었다.

동시에 親韓的인 友邦 國家中에서도 일부 國家는 韓國의 立場과 그 說明에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具體的인 案을 제시할것을 要求하여 韓國을 支持하는데 있어서 확고한 태도를 表明할것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중에는 「베네룩스」 三國을 包含해서 「브라질」 「첸야」, 「폴투갈」, 「우간다」, 「차드」등이었다.

이러한 點으로 미루어 보아 二十九次 UN 總會에서는 낙관을 불허하는 긴장감마저 팽배해 있었다. 이에 반하여 北傀側은 그들의 支持勢力을 규합함에 있어서 前年 第二十八次 總會時의 공동 제안 국 거의 全部를 확보하고 있었을뿐 아니라 時間이 경과됨에 따라 그 勢力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前年에는 總會時에 中共의 힘을 크게 입었으며 中共이 모든 면에서 압장섰던데 반해 二十九次 總會서는 蘇聯이 中共 못지않게 積極的인 태도를 取하고 있는바 이는 年初의 UN 資源 總會를 비롯하여 國際 海洋法 會議나 人口 會議에서 더욱 양성화 되어버린 第三勢力의 단합을 의식하고 이에 대한 영향력 및 주도권을 確立하기 爲해 努力하고 있는 戰略이었으며 韓國問題에 関한 한 그 해결의 關鍵을 쥐고 있는것은 中共이 아니고 蘇聯이라는 認識을 北傀에게

注入시킴으로서 中蘇 對立 狀況속에서 北傀를 蘇聯側에 끌어 드리려는 戰略的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北傀側에게는 有利한 방향으로 작용되었으며 따라서 北傀側 결의안의 支持勢力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응한 西方側은 友邦諸國間의 의견 조정이 아직 이루어 지지 못한 狀況에서 北傀側案에 對한 具體的 對應 戰略을 樹立치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前年까지만 해도 共同 제안국으로 韓國을 積極 支援한 주요 友邦國 정도 韓國 支持에 對한 태도표명에 미온적이었으며 특히 國際적으로 대한 輿論이 惡化되자 韓國의 주장에는 그만큼 설득력이 減退되어 버렸다. 그중에서도 특히 치명적인 것은 韓,日 關係의 경화라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第三勢力圈은 年初에 있었던 U N 資源 總會 이래 反西方 反先進國의 경향을 더욱 노골화 시키면서 그들의 反 西方的 意識을 發散시킬 수 있는 계기라면 어떤 경우이건 이를 이용하여 發散시켜 보려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와같은 분위기를 이용하고 편승하려는 中共과 蘇聯의 策動이 上昇하여 第三世界의 勢力圈에 對한 北傀의 편향을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總會에서의 北傀와의 對決은 韓國의 고전은 勿論 敗北까지도 물고 올수 있다는 非觀論이 크게 대두되었다.

韓國은 이와같은 國際情勢下에서 움직이는 有關國 및 北傀側의 戰略을 감안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의 外交力量을 最大限으로

로發揮하여 總회에 입할 態勢를 講究하였다. 得票 公작면에 있어서 消極적으로 보이고 있었던 총래의 韓國支持 友邦諸國에 對해서는 韓國을 積極 支持하도록 설득 外交를 우선적으로 展開하였으며 이들 韓國支持 國家들의 力量을 總動員하여 第三勢力圈에 있는 中東諸國이나 「A A블록」諸國 그리고 中南美 여러나라등 淸약지역에 對해서 積極적인 幕後 外交 交渉을 전개하도록 유도했다.

總會에서의 議事進行 節次上에 있어서의 戰略으로서는 제일 먼저 運營委員會에서 韓國問題에 關한 總會議題 上程을 저지시키도록 우선 힘썼고 그와같은 저지 戰略이 失敗하였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의 独自の 결의안을 작성 제출하거나 아니면 「UN」기발하의 駐韓 全外國軍의 撤收라는 北傀側 의제하에서 제출된 그들의 決議案에 對해 韓國이 修正案으로 대비할것을 준비하여 이에 對한 修正案을 作成하도록 하였다. 그 內容으로서는 總會의 분위기 및 狀況의 發展에 따라 적절한 內容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서 多角적으로 對處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案을 준비하도록 努力했으며 그중 重要한 것은 첫째, UN軍司令部 問題의 安全保障理事會로의 移管案. 둘째, 第二十八次 「UN」總會 決議를 再確認 하는것. 셋째, 6.23 外交宣言의 정신에 입각한 南北韓 「UN」同時加入 권고등을 包含하도록 하였다. 또한 二十八次 「UN」總會에서의 같이 南北韓 決議案에 對한 表對決을 피하기 위해 雙方의 歎후절충에 의한 「군센서스」(cosensus agreement) 合意로 유도 對理할 수 있도록 妥協 可能性을 타진 추구해 나갔다.

그 當時 韓國으로서는 韓半島를 둘러싼 強大國의 움직임에 경계
를 게을리할 수 없었다. 29次 UN總회의 招請이 「UN」軍司
令部 問題에 提及되고 있었던 狀況下에서 美國議會 주변에서는 駐
韓美軍司令部의 統合案等 UN軍 司令部에 對한 現象 변경 可能性
을 示唆하고 있었던 日本은 外相發言을 통해서 南北韓의 自主平和
統一 實現은 주변 有關 強大國인 美, 蘇, 中, 日이 具體적으로 責
任을 져야한다고 하면서 日本은 韓半島問題 解決을 위해 이들 4
大國과 「UN」에서 協議할 用意가 있다고 천명하여 왔었다.
이에 결하여 蘇聯은 「UN」軍司令部를 解体한다면 駐韓美軍에 對
해서는 개입치 않겠다는 非公式 態度를 表明하는등 一連의 움직임에
對해서 事態의 發展을 注目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배후 強大國들
間에 모종의 政治的 흥정이 韓國의 의사를 무시할 可能性이 없지
않았으며 無視한채 强行될 수 있는 危險性이 있었으므로 得票工作
이나 對日外交 問題等에 專念한 나머지 이와같은 危險性에 對해서
경계를 소홀히 하는점이 없도록 努力해야 했다.

北傀는 「유엔」기발下의 駐韓 全外國軍 撤収라는 議題(문서번호
A-9703)를 1974年 8月16日에 提出한 後 한달이 경과하여
9月16日字로 드디어 다음과 같은 두개 항목을 包含한 決議案을
提出하였던 것이다. 그 첫째는 「유엔」기발下의 駐韓 全外國軍의
撤収가 必要하다는 事實을 말하고, 둘째, 韓半島 問題에 關係 직
접 關係이 있는 당사자들이 「유엔」기발下의 駐韓 全 外國軍 撤
収에 關係된 問題들을 解決하기 爲해 적절한 조치를 取해야 한다

는 信念을 表示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이 北傀 決議案을 28次 「유엔」總會에서의 그들의 決議案과 比較 分析해 보면 그때는 첫째, 「언커크」解体를 問題삼았고, 둘째 駐韓 外國軍의 國際聯合旗 使用權利를 말소하고 「유엔」軍 司令部를 解体한다는 것이었으며 셋째, 駐韓 外國軍의 전면적인 撤收等과 같은 具體적인 內容을 包含한 직접적이고 강경한 것이었는데 比해 이 決議案은 「언커크」解体問題가 前年에 이미 解体결정이 되었다는 事實을 決議案 前文에서 언급하고 나서 나머지 駐韓外國軍 및 「유엔」軍 司令部 解体와 駐韓 外國軍의 전면 撤收 条項은 「유엔」깃발下의 駐韓 全 外國軍 撤收라는 귀절로 한데 묶어 두었다. 특히 前年과는 달리 이 決議案에는 「유엔」깃발下의 駐韓 外國軍 撤收에 關聯된 問題들은 解決하기 위해 직접 關聯 당사자들의 적절한 措置를 取할 것이라고 추가되어 있어 北傀 결의한 전체가 內容上으로나 表現上으로 前年에 比해 약간 後退 내지는 完화된듯한 인상을 풍겨주고 있다.

이에 반하여 韓國側 決議案과 比較해 보면 우리는 28次 유엔 總會에서의 合意聲明을 再確認하고 同時에 南北對話를 促求하였으며 安全保障 理事會의 責任下에 있는 유엔軍 司令部의 장래를 包含한 韓國問題 現況에 關해서는 關聯 당사자들과의 직접 協議로 적절한 節次를 거쳐 處理한 것을 希望하고 있다. 따라서 北傀側 결의안과 我側 결의안과는 큰 차이가 없는 大同小異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 혼동을 가져올 만한것이 되었다.

이와같이 北傀側이 그 內容上으로도 表現上으로도 볼때 어느정도 後退한 인상을 줄 뿐 아니라 我側決議案과 混動을 가져올만한 決議案을 提出한데는 다음과 같은 理由가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첫째, 北傀側이 종래의 강경한 자세한 現 國際 狀況으로 보아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단단하여 유연한 表現으로 되어 있는 韓國의 決議案이 비교적 설득력이 있겠다는 評價를 내렸으며. 둘째, 北傀側은 유연한 자세를 取함으로서 韓國側에 對한 支持 勢力의 增大를 저지하는 同時에 不動 勢力을 北傀側이 흡수해 보겠다는 戰略的 타산하에서의 後退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셋째, 그러나 이것은 또 北傀側이 기어이 票對決을 감행하여 여하한 方法으로라도 그들의 決議案을 通過시켜 보겠다는 決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며 끝으로 따라서 北傀側의 決議案은 완화 내지는 後退 했다는 속임수 戰術 아래 종래의 주장인 「유엔」軍 司令部의 解体와 駐韓 美軍의 撤收를 기어이 관철시키려는 심산인 것으로 分析되었다.

특히 주목할 點은 韓國側, 決議案에 使用된 직접 관련 당사자라는 用語를 北傀側 決議案에서도 使用하고 있는데 韓國이 使用한 직접 관련 당사자라는 用語에는 南北韓을 包含한 有關 強大國을 指稱하고 있는데 反해 北傀側은 지금까지의 주장으로 보아 유엔軍 司令部와 北傀 即 美國과 北傀가 韓國 休戰協定에 당사자로서의 직접 관련 당사자란 뜻으로 풀이 되며 따라서 北傀側의 決議案은 對美不可侵 協定까지를 겨냥하고 있음이 들어나고 있으며 北韓側이

직접 관련 당사자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는 底意에서 評價할 때 비록 韓國決議案이 通過된다 하더라도 北傀側은 韓國決議案에 使用된 직접 관련 당사자에 對해서는 北傀와 美國을 指稱한 것이라는 생떼를 부릴 수 있는 爭點의 소자를 만들고 있음이 明白해졌다.

結論的으로 南北의 決議案을 比較해 볼 때 本질 問題에 對해서는 韓國을 安保理에 移管하여 직접 관련 당사자들의 協議를 통한 解決을 내세우고 있는데 反해 北傀側은 직접 관련 당사자에 依한 적절한 조치를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그 表現도 크게 完化되고 있기때문에 지금까지 比較적으로 설득력이 있었다고 評價되어온 韓國 決議案의 合理性을 크게 減退시킬 우려가 있었으며 따라서 北傀側의 決議案은 그 内容上 韓國에 對한 역습으로서 우리의 對「유엔」戰略에 重大한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危險 可能性이 크다고 評價 하였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韓國側으로서의 危險 부담이 큰 票對決을 피하기 爲해 兩側 決議案 内容이 「직접관련 당사자의 協의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有似性에 입각하여 작년과 같은 合意 處理 方式으로 타결되도록 막후 절충을 강화했으며 그러기 爲해서 「UN」會員國들에 對한 설득을 통한 득표 교섭을 강화하고 北傀側의 決議案 통과가 無望해질 정도로 韓國 支持表를 다수 확보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일이었다.

또한 案件심의에 있어서는 先決權 확보가 주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北傀側 議案접수가 8月16日이었으며 번호가 106号인 사

실에 반해 韓國의 議案접수는 9月3日이었으며 번호는 110号로서 北傀側의 案件 순위가 빠르기 때문에 만일 選營委員會에서 兩側 案件이 統合되지 않고 分離上程되어 별도로 討議될 경우에는 北傀側 案件만이 討議 先決되어 버리고 或시 韓國 案件은 討議조차 되지 못한채 끝나버릴 危險性이 있었다. 그러나 그 반면 選營委員會에서 兩側 案件이 統合될 경우 결의안에 대해서는 韓國側이 먼저 提出하였기 때문에 韓國 決議案이 先表決되는 것이며 때문에 무엇보다도 第1次的으로는 選營委員會에서의 案件統合에 最大限의 努力을 경주하여 이를 실현시켜야 할 問題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過去의 관례로 보아 特別한 반대를 爲한 단합이 결속되는 경우가 아닐때면 案件 統合은 무난하게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여기에 참고로 兩側 決議案中 그 前文의 內容을 比較해 보면 첫째, 韓國은 韓半島 平和統一 결속을 爲한 진전이 必要하다고 지적하고 둘째, 7.4 共同聲明과 兩側 態度 表明에 만족함을 밝히고 셋째, 1953年 7月27日 締結된 정전형정이 平和安保 유지에 必須的임을 인지하며 韓半島 統一을 達成하기 爲한 계속적인 責任을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比較해 볼때 共產側案에 있어서는 첫째, 韓半島가 분단된 이래 아직 再統一이 實現되지 않음을 인정한다고 지적하고 둘째, 第28次 「유엔」 總會 결정을 고려하고 그러나 總會결정이 實現되지 못하였음을 認知하였다. 셋째, 駐韓 外軍의 간섭이 자주 平和統一을 爲한 對話 促進에 장애기 되

고 있음을 지적하고 넷째, 外勢의 간섭을 종식시키고 南北對話를 促進 高부하여 加급적이면 最단 時日내에 平和統一이 達成되도록 유리한 여건을 造成함은 유엔憲章의 기본정신임과 원칙에 合致한다 고 하였다.

兩側案을 比較 評價해 볼때 가장 重要한 것은 南北이 다같이 7.4 共同聲明 精神에 입각한 자주적 平和統一의 의견이 合致되었 다는 點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둘째, 平和統一을 지향한 對話가 교착 狀態에 빠져있다는 點 即 統一을 爲한 조치가 전혀 作動되 고 있지 않다는 點을 지적하였고 셋째, 韓國은 무엇보다도 平和安 保 유지가 平和統一의 前提條件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北傀는 오 히려 그 平和가 外軍의 간섭에 依해서 저해되고 있으며 外勢의 간섭의 自主平和統一을 爲한 전진의 방해요소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問題는 外勢가 平和와 統一접근의 逆機能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順機能을 하는것이냐 하는 판단의 차가 이 兩 決議案의 成敗를 判가름 할 것으로 評價 된다. 여기에 韓國側 決議案의 不利한 立場, 即 7.4 共同聲明에 依한 自主統一의 정신에 駐韓 유엔軍을 外勢로 볼 때는 特히 第3勢力權 諸國에 對해서는 압득 이 가지 않는 逆機能的 반응을 일으킬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된 것이다.

V. 유엔에서의 勢力構造分析

계속해서 우리는 제 29次 「유엔」총회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세력 分布와 우리의 「유엔」회의 戰略 運營 및 支持交涉을 위한 活動 狀況을 평가하고 各國 代表들의 發言 內容을 分析하고 끝으로 표결 結果를 評價해 보고져 한다. 29次 「유엔」총회는 共產諸國과 非同 盟諸國의 聯合勢力이 團結된 多數가 君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國이 共產側에 對해서 勝利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主張이 이들 國家들에게 充分한 說得力을 구사하지 못했음 에도 不拘하고 同時에 우리의 共同提案國의 數가 數적으로 열세였 음에도 不拘하고 이루어 졌었다는 事實에 注目을 要한다.

우리의 勝利는 오직 議事進行 戰略을 통한 節次上的 勝利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韓國은 會議節次上的 戰略구사를 재치있게 감행 하므로서 第一 政治委員會에서 友邦側決議案을 先表決케 하는 結果 였으며 實利的 인 問題에 있어서의 양보가 없는 범위내에서 友邦側의 決議案의 수정을 許諾하여 一部 중도적 立場의 國家들의 환심을 살 수 있었다는 것과 積極적인 支持 交涉活動으로 支持 國家들을 急速히 確保 하였다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駐韓「유엔」軍의 存在理由가 多數의 會員國에게 說得力을 잃어가고 있다는 事實과 韓國에 對한 確實한 支持 勢力은 中南美에만 局限 되는데에 반해 北傀는 東歐와 「아프리카」 대륙의 多數의 확고 不動한 支持 勢力을 確保하고

있음이 뚜렷이 나타났다는 점을 돌이켜 볼때 今年 30次「유엔」 총회에서의 問題点を 점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우선 共同提案국을 分析해 보기로 한다. 아시아 태평양 地域에서는 韓國案 提案國數가 4對2로 나타났다. 共產側 共同提案國으로는 中共과 몽고 뿐인데 반해 韓國은 日本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4個國이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우리가 極度로 劣勢에 모이게 되었다. 共產側 提案國으로서는 19個國인데 反해 우리는 中央아프리카, 가봉 「감비아」, 「레소토」, 「라이베리아」 등 5個國이다. 또한 中東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Oman」 1個國을 確保할 수 있는데 반해 北傀는 7個國을 確保 하였다. 그들은 「알제리아」, 「면주예벤」, 애굽, 「이락」,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이 있다. 美洲에서는 「큐바」만 北傀側으로 가담 하였으며 우리는 15個國을 確保할 수 있었다. 西歐에서는 「말타」가 北傀側에 가담 하였으며 따라서 東歐 10個國을 합하면 北傀側 共同提案國은 40個國이란 엄청난 數를 確保하고 있었으며 그에 反해 韓國側은 28個國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最初 6個國으로 시작하는데 반해 共產側은 32個國 共同提案으로 시작되어 우리는 22個國을 追加 하였는데 반해 北傀는 오직 8個國을 追加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共同提案國의 分布를 評價해 볼때 友邦側決議案 共同提案國의 主導 勢力은 中南美 國家들이며 28個 國家中 14個國을 차지 하였고 共產側 共同提案國의 주도세력은 「아프리카」 國家들로서

40 個國中 그 과반수인 19 個國을 차지하여 東歐圈 10 個國을 합하여 거의 30 個國을 確保한 셈이 된다. 共同提案國의 地域的 構成 比率을 보면 友邦側決議案에 대해서는 美洲 地域이 54% 그리고 其他地域이 46%로 되어 있으며 共產側決議案은 「아프리카」地域이 48%, 東歐地域이 25%, 그리고 其他 地域이 27%로 되어 있다.

共產側은 案件 提出과 同時에 40 個國中 80%에 該當하는 32 個國의 共同提案國을 이미 규합하고 있는 반면 友邦側은 案件提出 1 個月 後이며 「유엔」의 討議가 이미 시작한 後인 10月3日에야 28 個國中 약 80%에 該當하는 23 個國을 確保할 수 있었다는 點은 支持度에 있어서의 大 差別的인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에서의 得票 交渉을 위해 活用된 南北間의 人力比較는 다음과 같다. 韓國은 유엔代表部에 大使 1명, 公使 4명, 參事官 4명등 총 15명이며 北僞는 大使級 3명, 公使級 1명, 參事官 3명 및 其他 職員으로서 總 21명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우리는 2명의 大使級 人사가 支援 되었으며 北僞는 大使급 1명과 參事官급 3명을 그리고 其他 職員 2명등 總 6명을 追加 增員시켰다. 그러나 南北間의 實際 活用人員數는 約 11名 程度이며 우리는 高位層 人士들을 많이 活用했다.

支持交渉을 爲한 活動은 南北이 다같이 大體로 駐「유엔」 상주 代表部 職員들에 依하여 實施 되었으나 韓國의 境遇는 駐유엔大使를 비롯하여 駐가본대사, 駐「모로코」대사를 動員 하였고 公使 3名, 參事官 3名等이 主導 하였으며 北僞는 大使 2名과 公使 1名을 그리고 書記官 3名이 활약 하였다.

韓國의 境遇는 駐「가본」代使인 金昌熙氏는 얼마전까지 駐「유엔」公使였으며 駐모로코 崔雲祥代使는 前駐카이로 총영사로서 駐「유엔」各 代表國 및 阿中東國家 代表들과 친분이 많은 반면 北傀는 大體로 一線外交活動의 經驗이 不足한 者들을 韓國問題 討議가 압박한 時期에 派遣되어 效果的인 活動이 不可能 하였다고 評價된다.

앞서 說明한대로 韓國은 불리한 位置에 놓여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29次總會에서 勝利할 수 있었던 것은 韓國이 會議節次上의 戰略的 技術을 구사 하였던 까닭이다. 그중 특기할 것은 韓國의 決議案에 대한 先表決權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그 접근 方案으로 段階的 公작이 成功한 까닭이다. 먼저 韓國은 決議案을 北傀보다 앞서 提出하였다. 1974年8月16日 共產側 案件이 먼저 「UN」 事務局에 提出되어 友邦側 案件은 1974年9月3日자로 뒤늦게 提出되어 假議題 番號를 韓國은 늦게 賦與 받았다. 그러나 友邦側은 案件을 提出할때에 이미 決議案도 同時에 提出하므로써 1974年9月16日자로 提出된 共產側 決議案보다 앞질러 먼저 先表決權 獲得의 明分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문제는 共產側 案件과 友邦側 案件이 별개의 案件으로 따로 取扱되지 않도록 努力해야만 했다. 即 兩案件을 統合하여 單一案件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은 例年の 貫例에 따라 불매 統合 單一案件은 거의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1974年9月19日 運營委員會에서는 友邦側의 제의에 의거하여 表決한 結果 兩案件을 統合하여 單一案件으로 採択하기로 決定을 보았다.

이때 表決 結果는 贊成 9 , 反對 7 , 棄權 8 , 그리고 不參이 1 이었다. 이리하여 統合된 單一案件下에 두개의 決議案이 포함되어 있는 形態가 採択될 수 있었다.

이와같이 友邦側 決議案文書에는 先번호가 賦與될 수 있었다. 오히려 當然한 結論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했으나 共產側 國家들은 이에 反對하여 共產側 決議案이先表決權을 가져야 한다고 強力히 主張하였다. 이때 美, 英 등 友邦國家들은 이 問題에 對한 正當한 會議進行 規則을 解析해 주도록 「유엔」事務局에 要請하였다. 그 要請에 따라 1974年10月8日 「유엔」사무국은 友邦側決議案의 先表決權을 確認하였으며 同時에 그 文書를 배포함에 있어서 牛邦側 決議案에 先번호를 賦與하였다.

그러나 共產側은 그들의 高집을 觀測하기 위해서 共產側決議案에 對한 先表決權을 認定한다는 同意를 내어 1974年12月9日 第一政治委員會에서 兩側 決議案의 表決에 앞서 「큐바」가 同一한 同意案을 表決에 부치게 되었으나 贊成 48 , 反對 50 , 棄權 33 , 不參 6으로 근소한 차이였으나 否決되었다. 따라서 友邦側決議案의 先表決權은 確定된 것이다.

友邦側의 勝利에는 또 다른 理由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友邦側 決議案에 대해서는 會員國이 提起하는 수정이나 決議안에 대해서 유연한 姿勢를 취하였다는 事實이다. 그 한 例로 韓國決議案은 불란서의 수정안을 수락하였던 것이다. 第一政治委員會에서 불란서의 수정안을 友邦側決議案의 共同提案國들이 수락하였으며

나아가서는 「바루더」수정안을 可決시키므로서 第一政治委員會 및 本會議에서 友邦側決議案이 表決에 불허졌을때 一部 國家들이 기권할 것이라는 태도를 바꾸어 贊成하게 되었고 또한 反對意思을, 表明했던 一部國家들이 기권으로 轉向하여 贊反 表差가 더욱 확대되었었다. 그에 反해서 第一政治委員會에서 共產側決議案을 表決할 때에는 一部 國家들이 贊成에서 기권 또는 기권에서 反對로 轉向하여 共產側에는 매우 不利한 結果가 惹起되었었다.

「바루더」수정안의 境遇도 마찬가지다. 友邦側決議案 共同提案국이 事前에 이를 公式적으로 受諾하지는 않았으나 第一政治委員會 可否 表決에서 이를 通過시킴으로써 第一政治委員會 및 本會議 表決時 友邦側決議案의 찬성표 減少에 寄与하였던 것이다.

討議가 진행되는 동안 各會員國들의 發言을 綜合해 보면 먼저 9月18日에서 10月10日 사이에 있었던 本會議 一般討議中에 나타난 韓國關係에 관한 發言을 分析해 본다. 發言內容을 볼 때 약 8가지의 內容으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는 가장 많았던 것이 「유엔」깃발下의 駐韓外軍 撤収의 促求 問題였다. 총 32개국 代表의 發言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번째로서는 제 28次 「유엔」총회에서의 合意聲明을 履行하고 南北 對話를 推進하도록 促求하는 등의 發言이다. 16個國 代表의 發言에서 볼 수 있다.

그다음 南北韓「유엔」 同時加入을 反對한다는 發言이 3이요. 同時加入을 支持 한다는 發言이 2개 國家였었다.

또한 安全保障理事會에서 「유엔」軍 철수에 따른 方案을 강구토록 建議한 發言이 2번 그리고 平和的 韓國統一을 위한 어떠한 措置도 支持한다는 發言이 3이었다. 그 反面에 北傀의 平和統一 努力을 支持한다는 發言이 3, 나아가서는 韓國은 民主勢力 彈壓을 조장하고 있다는 發言이 2번이나 있었다.

이것을 地域別로 볼 때 아시아 태평양 地域에서는 韓國立場을 支持하는 國家가 5, 北傀立場을 支持하는 國家가 2, 中立的인 發言이 5, 합해서 發言國이 12個國이 되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총 發言國數가 24個國이었는데 韓國 支持가 4個國, 中립이 4個國, 그리고 나머지 16個國이 北傀의 立場을 支持 發言 하였다.

中東地域에서의 發言國數는 4個國이었다. 이는 모두 北傀의 立場을 支持하였다.

美洲에서는 「큐바」가 北傀를 支持하고 「가이아나」가 中立的인 發言을 했다. 西歐國家에서는 「말타」가 發言하여 北傀의 立場을 支持하였다. 東歐國은 10個國이 發言해서 北傀를 支持했다. 따라서 韓國의 立場을 支持한 發言國數는 9個國인데 反해 北傀立場을 支持하는 國家의 總數는 34個國이며 10個國이 中立的인 發言을 하여 韓國問題에 관심을 表明한 國家가 全部 53個 國家였다.

이것을 綜合的으로 評價해 보면 本會議 一般討議時의 第一政治委員會 韓國問題 討議時에서 다같이 最大多數의 國家들이 「유엔」것발하의 在韓外軍 철수를 強力히 主張하는데 反해 相當數의 國家들은 南北對話나 第28次 總會 合意事項을 이행하도록 促求하고 있다.

그리고 發言中의 特色은 共產側 支持國들의 發言 빈도와 강도가 友邦側 支持國들의 그것에 비해 훨씬 강력하다는것 그리고 共產側 支持 發言國들은 本會議場에서의 一般 討議時에서나 第一 政治委員會에서의 韓國問題 討議時를 통해 대부분 東歐諸國들을 비롯한 「아프리카」諸國들인데 반해 友邦側 支持 發言國家들은 대부분 中南美 國家들 이었음이 特色이다.

本會議 一般討議時 韓國關係 發言國의 支持度를 比率로 따져 보면 17% 對 64%로서 北傀 立場을 支持하는 發言이 우세하였다. 中立的인 發言은 19%였다. 北傀 立場을 支持하는 發言國의 地域別 構成 比率로 볼 때 「아프리카」諸國은 47%, 東歐諸國은 27%, 그리고 其他가 24%였다.

第一政治委員會에서 韓國問題 討議時 發言國의 支持 傾向別 構成 比率를 볼 때 韓國支持對 北傀支持는 36% 對 54% 그리고 中立的 立場이 10%로서 역시 北傀 立場支持가 우세하였다. 韓國立場支持 發言國의 地域的 構成 比率를 「아시아」태평양 地域 및 「아프리카」諸國은 各各 20%, 美洲諸國은 44%, 그리고 其他가 36% 였다. 北傀立場 支持 發言國의 地域的 構成 比率를 「아프리카」諸國이 39%, 東歐諸國이 29%, 其他가 32%였다.

友邦側을 위하여는 대체로 「라이베리아」와 「바바도스」가 의사 發言을 하였으며 共產側을 위하여서는 「큐바」가 의사 發言을 번번히 하였다. 修正案 및 결정안을 제의한 國家 또는 제의할 의사를 가진 국가들은 「프랑스」, 「사우디 아라비아」, 「튀니지아」,

「인도네시아」, 「스웨덴」등 이었다.

이와같이 하여 最終的인 決議案에 對한 表決 結果는 第一政治委員會에서의 共產側 決議案 表決 結果가 贊成 48, 反對 48, 棄權 34, 그리고 불참이 3으로서 議會규칙상 찬반이 同數일때는 決議案이 否決된다는 원칙에 따라 共產側決議案은 否決되었다. 그와 반대로 韓國의 決議案은 本會議 表決 結果 61, 43, 31, 2로 압도적으로 可決되어 韓國의 勝利를 거두게 된 것이다.

表決을 통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性格이나 特色을 가려보면 몇몇 國家들은 表決前의 태도와는 달리 韓國에 有利한 方向으로 태도를 轉向하였다는 事實은 불란서 修正案과 「바루디」 수정안이 韓國側에 依해 事前에 肯定的으로 받아 들여진 結果라고 評價된다.

友邦側 決議案에 對해 第1政治委員會와 本會議 表決時 반대에서 棄權으로 옮긴 國家의 數는 5個國이다. 그리고 本會議에서는 4個國이었다. 또한 기권에서 찬성으로 態度를 바꾼것은 주로 西歐제국으로서 6個國이었다. 共產側 決議案에 對하여는 第一政治委員會에서의 表決에서 贊成에서 기권으로 옮긴 國家는 주로 中東 및 「아프리카」 國家로서 4個國이고 기권에서 反對로 態度를 바꾼 나라는 6個國이었다.

그러나 反對로 몇몇 國家들은 表決하기 직전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韓國에 不利한 方向으로 태도를 轉向한 事實도 없지 않다.

「니제」와 「멕시코」가 찬성에서 기권으로, 그리고 「어퍼볼타」가 기권에서 반대로 제1政治委員會와 本會議 表決에서 태도를 바꾸었다.

또한 第一政治委員會에서 共產側 決議案을 表決할 때에도 「니제」가 反對에서 贊成으로, 「에쿠아돌」과 「스페인」이 反對에서 기권으로 그리고 「카타르」가 反對에서 不參하였으며 「가나」와 「어퍼볼타」가 기권에서 찬성으로 바꾸었다.

友邦側 決議案의 共同提案國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나 友邦側 決議案 表決時에 友邦側에 對해 가장 많은 支持度를 보여준 地域은 물론 西歐와 中東諸國이었다.

贊成投票中 友邦側 決議案에 대해서는 共同提案國이 46%를 차지했으며 非共同提案國은 54%를 차지하는데 반해 共產側 決議案에 대해서는 찬성 投票의 83%를 共同提案國이 차지했으며 나머지 17%를 非共同提案國이 차지했다.

以上 說明한 第29次 「유엔」총회에서 韓國問題에 對한 狀況을 分析해 본 結果 우리는 다음과 같은 主要한 문제점들과 有念해야 할 점들을 發見 할 수가 있다. 첫째, 現今의 國際社會에서는 그리고 特히 「유엔」총회에서는 多數의 國家들이 「유엔」軍의 役割에 對해 회의적인 反應을 表示하고 있으며 따라서 「유엔」것발下의 駐韓 外國軍 撤収 主張에 積極 同調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같은 明白한 國際的 情勢와 總會 분위기를 감안 우리의 새로운 決議案의 作成에 좀 더 유연한 態度를 明白히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友邦側 決議案을 積極 支持하고 나아가서 共同提案國으로서 韓國의 立場을 크게 뒷받침하고 있는 地域이 中南美國家들이라고 하는 事實을 主要視하고 北傀는 이 地域에 對한 침투를 戒할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中南美 地域에 對한 北傀의 침투의 積極的인 저지와 나아가서는 共產側 決議案을 무더기로 뒷받침하고 있는 共同提案國의 표발인 「아프리카」나 東歐地域에 對해서는 韓國이 회유政策이나 接近 活動을 展開할 必要가 있다.

韓國의 得票공작은 과반수 以上이 「유엔」총회를 의식한 決議案 支持交渉 活動이 시작된 후에야 비로소 수집, 집결될 수 있었던 부동표적인 性格을 띤데 반해 北傀에 對한 찬성표는 앞서 말한바대로 약 83%가 항상 共同提案國으로 使用 가능한 고정된 支持票임을 察知하여 韓國도 하루바삐 「유엔」에서의 고정적 支持勢力의 確保에 全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韓國에 對한 고정적인 支持勢力이라 할 수 없겠으나 언제나 韓國 立場에 同調할 수 있는 西歐諸國들과의 關係는 소홀히 할 수 없으며 29次 「유엔」총회에서 韓國立場을 支持하여 준 中東國家들에 對하여도 友好關係를 지속하기 위해 最善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측 決議案의 先表決權 획득작전과 관련하여 또한 중도적 國家들의 수정안 및 절충안 제의를 관심있게 고려하여 주는 융통성있는 태도는 앞으로도 우리의 立場을 支持해 줄 수 있는 勢力 確保에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믿어 持續되어야 할 우리의 자세일 것이다. 修正案 및 절충안등을 언제나 제의할 수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나 「튜니지아」 그리고 그와 같은 가능성을 언제나 지니고 있는 「인도네시아」등의 國家와 共產側 立場을 지지하는 議事 發言으로 友邦의 戰列을 크게 混亂케 할 우려가 있는 「큐바」나 「나이제리아」

및 소련, 中共 등의 國家들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韓國 立場에 유리한 方向의 태도 표시를 한 바 있으나 表決時에 이를 履行치 않는 國家들 즉 「니제」, 「멕시코」, 「어퍼볼타」, 「에쿠아돌」, 「스페인」, 「가나」 등에 대하여는 계속 경계를 요하며 이에 대한 特別한 배려가 必要하다.

끝으로 韓國 立場을 支持해 줄것을 교섭하기 위한 代表團 진용에는 「유엔」 駐在 各國 外交團들과 친분이 豊富한 실무자 또는 지역별 專門外交陣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총회가 임박해서는 駐「유엔」代表部の 人事更迭은 금물이라고 하는 事實은 再함을 要치 않을 것이다.

VI. 第30次 「유엔」총회 決議案 잇슈別 分析

以上 說明한 第29次 「유엔」총회 戰略을 통해서 얻은 經驗과 敎訓을 살려 大韓民國 外務部는 對共產側 決議案에 기선을 잡는 「유엔」戰略을 펴야겠다는 고려에서 駐韓「유엔」軍 司令部를 時限部로 自진 해체 하겠다는 西方側案을 6月28日字로 「유엔」사무국에 제출하여 先議決權을 먼저 確保하였다. 이 西方側 決議案은 조건부 駐韓「유엔」軍 司令部 自진해체 決議案으로서 지난 20여년간 한반도 安保의 基동을 이루었던 駐韓美國의 「유엔」軍 地位를 能動的으로 변경하고 事實상 새로운 休戰 體制를 설정하려는데 主要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먼저 이 西方側案의 特徵을 살펴본다면 한반도에 있어서 休戰協定이 有效하게 존속될 수 있는 代案이 마련된다면 즉 새로운 休戰體制를 마련한다면 「유엔」軍 사령부는 自진 해체 하겠다는 것이다. 決議案 第3項에 보면 「유엔」군 사령부가 1976年1月1日을 기하여 해체될 수 있도록 上記 協議가 完結되고 休戰協定 유지 代案이 마련될 수 있기를 希望한다. 그리고 二項 후단에는 休戰協定의 維持를 위한 方案과 더불어 「유엔」軍 司令部가 해체될 수 있도록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淸단시일내에 協議를 施行할 것을 적절히 권장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今年 第30次 「유엔」총회에서는 우리의 立場이 매우 不利해 질 것은 틀림이 없다.

8月25日 부터 「페루」의 首都 「리마」市에서 개최되는 非同盟國
外相會議에서 北傀만이 加入되고 韓國이 除外될때 나아가서는 北傀의
立場을 支持하는 決議案이 「알제리아」會議에서와 같이 다시 만장일
치로 採択될 때에는 그 여세를 돌아올 경우 「유엔」에서의 우리의
立場은敗北의 고배를 마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特히 「폴투갈」
政權의 귀추가 주목되며 「차드」의 左傾化와 「크메르」, 월남, 「라
오스」의 赤化를 가져온 돌발적인 인도지나 사태로 말미암아 非同盟
諸國의 反美的인 發言이 전례없이 強化될 것이며 또한 이번에 加入
될 「아프리카」 3개국은 非同盟勢力과 단합할것이 틀림없기 때문
이다.

「유엔」創立 당시부터 60年代 후반에 이르기까지 「유엔」의
主導權을 장악해온 美國이 巴야흐로 「유엔」의 野黨으로 전락 하였으
며 會員國 加入問題에서 南北共產越南의 「유엔」加入을 저지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美國에 對해서 非同盟諸國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第3세력권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中共의 對 「유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대될것이 明白하다.
따라서 反美的인 勢力의 증대와 이를 배경으로 한 中共의 상대적
영향력 증대는 今年 第30次 「유엔」총회에서 對北傀 表對決에
있어서 決定的으로 韓國을 不利하게 할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國際的 狀況을 事전에 간파하여 北傀는 巡方外交에 힘을
올려 非同盟諸國의 支持를 얻기 위한 外交活動을 맹렬히 展開하고
있다. 金日成은 지난 4月28日字 中共 北傀共同聲明을 통해 그들의

立場을 적극 支援할 것을 中共으로 부터 再確約을 받았다. 그 共同
聲明의 主要骨字는 제일 먼저 北傀의 唯一 合法性을 내세우고 있었
으며 둘째, 「유엔」군사령부의 撤収 및 駐韓美軍의 철수를 要求했으
며, 셋째, 中共은 北傀의 統一政策을 積極的으로 支持한다는 것을
再確認 하여 그들의 한반도 赤化를 爲한 戰略的 主張을 明白히
밝히고 있다.

우리는 政府樹立後 28年間 國家의 安保와 統一問題에 있어서
「유엔」과 協力해온 우리 韓國은 이제 民族과 國家의 生存權을
유지하기 위하여 韓國安保 外交의 기본 體制를 수정 즉 明分的
「유엔」中心 安保 外交에서 實質的 安保外交로 전환해야 하는 重大
한 局面에 도달했다.

1. UN旗下의 駐韓外軍撤收와 UN軍司 解体問題

UN이 韓半島의 自由를 지키기 위해 駐韓 UN軍司令部를 創設하고 오늘에 이르기 까지 四半世紀가 지났다. 그동안 駐韓 UN軍 사령부가 北傀의 침략군을 응징하면서 韓半島에서의 平和를 정착시키기 위해 바친 貢獻은 全世界 自由民의 자랑으로 영원히 記憶 될 것이다.

1950年6月25日 北傀 金日成 집단의 무력남침에 따라 韓國 동란이 발발하자 UN 安全保障 理事회는 7月7日 UN軍 司令部 설치 결의안을 채택하여 世界 平和와 自由 수호를 위하여 史上 처음으로 침략자를 응징하기 위한 UN軍을 創設하기에 이르렀다.

UN軍司令部 설치에 관한 결의안 第三項에 「安全保障 理事회의 韓國事變에 관련된 모든 決議에 의거하여 병력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全會員國은 여하한 병력 기타 원조를 통합된 司令部로 하여금 사용케 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第五項에는 「北傀軍에 對한 작전중 참전 各國의 國기와 함께 國際聯合旗를 임의로 병용할 권한을 統合軍 司令部에 賦與한다」로 되어있다.

이렇게 創設된 UN軍 司令部를 今年 30次 UN총회에 제출된 西方側 決議案에 조건부 자진 해체의 方法으로 해체 할것을 포함하고 있다. 西方側 決議案에 明示된 內容에는 「1953年7月27日字 休戰協定은 이地域의 平和와 安全維持에 계속 不可決함을 인식하며 타방 직접관계 당사자들이 UN軍 司令部의 終了에 앞서 休戰協定の 모든 규정이 앞으로도 계속 有效하다고 간주하는데 동의한다면 美國

政府는 1976年1月1日字로 UN軍 司令部를 종료하고 現在 UN軍 사령관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모든 休戰協定 규정의 이행을 보장할 후계 사령관으로서 美国軍 및 韓國軍 장교를 大韓民國과 더불어 임명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한 1975年6月27日字 美国政府의 安全保障 理事會議長官 公翰에 의하고.... UN軍 司令部가 해체될 수 있도록 직접 관계국 당사자들이 최단 시일내에 協議를 施行할 것을 적절히 권장해 주기를 希望한다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北傀는 그들의 決議案에서 國際聯合軍 사령부를 해체하고 UN旗下에 있는 南朝鮮內의 모든 外國軍을 撤收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둘째 韓國의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치하기 위해서 休戰協定의 實際的 당사자에게 促求한다. 세계 南北은 다같이 南北共同聲明에 原則을 준수하고 무력증강을 중지하며 雙方의 軍隊를 대등한 水準으로 대폭 縮少시켜 무력충돌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勿論 西方側 決議案이나 北傀側 決議案中 어느것이 總會에서 채택된다고 가정해도 이 決議案의 性格은 UN헌장 규정에 따라 총회 권고의 性格을 가지므로서 안보리에 對한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UN軍 司令部는 「UNCURK」와 달라 총회 결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말해서 安保理의 결정을 보아야 한다.

유엔軍司가 해체되기까지는 大論爭이 벌어질 것이다. 北傀가 주장하듯이 UN軍이 韓國에 주둔함으로써 韓國에 對한 내정간섭이 韓國의 독자적인 平和統一 달성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하는 政治的인 論爭이 전개될 것은 勿論이며 나아가서는 UN軍 자체가 불법적으로

창설된 것이라는 그들의 상투적인 비합법성 논쟁이 격화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유엔」軍 사령부가 不法적으로 創設 되었다는 그들의 주장의 근거로서 6.25 사변 당시 安全保障理事會에서 통과된 일련의 決議案이 소련의 不參으로 無効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安全保障理事會의 意見을 憲章 第 27 條 三項에 따라 상임이사국의 贊成票를 包含한 그當時 7 個國의 合意로서 유효 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憲章 第 23 條 1 項에 明示된 상임이사국인 소련의 찬성표 없이 가결된 決議案은 無効라고 主張하고 있다.

이와같은 주장에 反해 西方側은 다음과 같이 맞서고 있다. 첫째, 憲章 第 28 條 1 項에 安정보장이사회 이사국은 항상 會議 소집에 응할수 있도록 理事會・所在地에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規定에 위반하여 소련이 不參 하였으므로 權利行事的 포기로 간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둘째, 지금까지의 安정보장이사회 회의 진행 관계에 따라 상임 이사국이 表決에 기권한 경우 그 기권을 否票로 간주하지 않았다. 따라서 不參할 경우도 같은 이유로서 否票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당연 하다는 것이다. 셋째, 憲章 解釋上的 問題로서 그 기구의 기능을 麻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條文 解釋은 法理上 不當 하다고 하는 法の 一般 原則을 내세우고 있다. 끝으로 그 問題의 合法性 여부는 安保理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法理論的 論爭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유엔」軍 사령부의 해체만으로는 韓半島의 세력 均衡에 급격한 變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 되므로서 제기되어야 할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여러가지 지엽적인 문제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主要한 것은 韓國動亂의 停戰을 가져온 1953年의 韓國休戰協定 문제이다. 休戰協定の 체결 당사자인 「유엔」군이 해체 되므로서 그 協定の 効力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中東에서 國際 聯合 軍(UNEF)가 撤収 하므로서 일어났던 힘의 空白과 「이스라엘」軍과 「아랍」軍이 격돌한 6日戰爭을 감안할 때 韓半島의 第2의 南北間의 武力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와같은 可能性은 現實的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友邦國들은 금년도 「유엔」총회에 제출한 決議案을 통해 비록 條件付이며 그 조건에 따라 時限을 제시한 「유엔」軍司 解体案 이기는 하나 이미 「유엔」軍司 存在 意義나 明分的 意義는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서 문제될 것은 大韓民國이 전제적 要件으로 제시하는 平和정착을 위한 事前 조치 後 解体란 방침이 과연 「유엔」부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共產側案과 어떻게 맞설런지가 매우 궁금하다. 同時에 「유엔」軍司가 解体될 경우 韓半島의 安保 問題와 관련된 休戰協定을 둘러싼 諸問題가 어떻게 처리 될 것인지 注目 된다. 그러나 「유엔」軍司가 解体되고 韓國의 安保를 韓美防衛條約에 의거한 美軍이 계속 韓國에 주둔하게 된다면 北傀가 지금까지 國際 무대에서 「유엔」軍司의 存在를 맹렬히 공격해 온 것과 같은 方法으로 駐韓美軍의 存在를 民族自決主義 原則에 입각한 民族統一 課業遂行에 장애가 되는 外勢의 간섭이라고 계속

선전 공세를 퍼 韓國을 國際社会에서 궁지로 몰아 넣을것이 틀림없
다. 분단국의 統一 問題와 安保問題間의 兩立이 어려운 要素들이
곧 이 外軍의 地位라고 말해 과연 아닐 것이다.

2. 休戰協定과 平和協定 問題

今年 韓国側 決議案에는 「유엔」軍 사령부의 解体를 수락할 것이나 그 以前에 平和維持에 關한 保障을 받아야 한다는 內容이 담겨 있다. 西方側 決議案 第2項에 安全保障理事會 이사국들이 休戰協定の 계속적인 준수와 이 地域에서의 平和와 安全의 最大限 유지를 보장할 필요성을 감안 하여 休戰協定の 維持를 위한 적절한 方案과 더불어 「유엔」軍 사령부가 解体될 수 있도록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最短時日內에 協議를 시작할것을 적절히 권장해 주기를 希望한다로 規定하고 있다. 이와는 反對로 北傀는 決議案 제목을 다음과 같이 平和와 自主的 平和統一이란 주제를 강력히 나타내는 題目を 붙인것은 매우 注目할 事實이다. 共產側 決議案은 「休戰協定을 公高한 평화로 전환 시키기 위한 有利한 條件 조성」 이라는 제목아래 그 第二項에 「유엔」軍 사령부 해체 및 外軍撤収와 관련 韓半島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平和를 公高히 하기 위해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꿀것은 休戰協定の 실제적 당사들에게 호소한다로 되어 있다.

西方側 決議案과의 차이를 찾아볼 때 北傀側에서는 休戰協定の 대안으로 내세운 平和協定이 그 內容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事項을 포함 하고 있다. 첫째, 그 休戰協定の 內容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軍비축소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事實을 指摘할 수 있다. 그들은 南北韓 實力의 10만 以下로의 감축을 주장하고 있으며 外國으로 부터의 武器 반입 및 軍費競争을 中止할것 등이 그 主要 骨字로 볼 수 있다.

둘째, 平和協定內에는 外國軍 문제가 반드시 제기된다: 「유엔」軍 사령부 해체 문제는 물론 모든 주한 外國軍을 撤収하여 韓半島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해 有利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民族自決主義原則에 입각한 平和主義 지향적인 色彩를 짙게 나타내어 第3 世 界의 性向에 맞는 「솔로전」을 제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西方側은 南北韓 주변 4대국이 「유엔」軍의 平和유지 기능을 대신 할 體制를 먼저 마련한 연후에 「유엔」軍司의 解体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平和定着을 위한 가장 合理的이고 착실한 제안이다. 이와 같은 西方側의 立場은 여러번 紙上에 發表 되었다.

「월티암 포터」 국무차관이 韓美經濟委員會의 만찬석상 연설에서 「유엔」軍 사령부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를 고려할 시기가 왔다는 말을 했다. 「키신저」역시 「유엔」에서의 韓國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지며 強大國間의 막후 교섭을 주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와같은 월련의 발언은 「유엔」軍司 解体 문제가 불가피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 주한 미군은 「유엔」의 모자를 벗고 한미방위조약을 근거로 계속 주둔하는 체제를 갖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뜻을 示唆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強大國間의 막후 교섭이 있을 것이라는 심사를 탐지한 大韓民國은 비록 限定된 效果를 維持하고 있을뿐이기는 하나 休戰協定の 의존 問題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朴大統領은 韓半島의 平和를 구체화 하기 위해 南北相互不可侵조약을 제의한 바 있다. 問題는 北傀가 어떠한 線에서 「UN」軍司를 대체하는 새로운

안보体制 機構를 수락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休戰協定 問題의 再檢討에 따르는 두가지 點은 우리가 언제나 경계 해야 할 사실이다. 첫째는 休戰協定 또는 平和協定の 당사자 問題로 귀착한다. 우리는 직접 「관계당사자」란 用語를 사용하는데 반해 北傀는 休戰協定の 「실제적 당사자」들이란 말로 表現하고 있는데 西方側은 당사자란 概念속에 南北을 다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北傀는 韓國을 배제 하고자 하는 企圖이 내포되어 있어 이에 우리는 경계를 設한다. 둘째 問題로서 우려되는 것은 西海岸에 위치하고 있는 백령도등 5個 도서의 地위 및 그 주변 水域의 法的 性格과 귀속 問題에 관한 것이다. 끝으로 南北韓은 雙方이 다같이 主張할 것으로 보여지는 法統性問題에 관한 사이다. 서로가 자기들만이 唯一合法政府라고 주장할 것이나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대두할 것으로 믿는다.

3. 軍 縮 問 題

今年 「유엔」 總회에서 討議될 北傀側 決議案 內容 가운데 끝으로 가장 주요한 것은 決議案 第三項에 明示된 軍縮 問題이다.

第三項을 볼것 같으면 韓半島의 南과 北은 南北 共同声明의 原則을 준수하고 武力증강을 中止하여 雙方의 軍隊를 대등한 수준으로 大폭 縮少하며 武力衝突을 防止하여 雙方間의 武力行使를 取하지 않는다는 保障을 為한 實際的 措置를 取하므로써 韓半島에 있어서 軍事的 對峙狀態를 해소하고 穩固한 平和를 유지하며 自主平和統一을 促進한다 라고 하였다.

일래 北傀의 軍縮제의는 1954年 「제네바」 會議에서 당시 北傀 外相 南日이 처음 재개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主張으로서 最近에는 代表的인 것이 1971年 4月 12日 北傀 外相 許煥이 最高 人民會議 第四期 第五次 會議에 제출한 報告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동 報告에서 軍縮의 內容과 明分에 關해 「美帝侵略軍이 물러간 다음 南北朝鮮의 軍隊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取함으로써 公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侵略的 도발 행동이 더는 감행되지 않도록 하며 南北이 다같이 美帝와 日本 軍國主義를 反對하는 鬪爭에 共同으로 나서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것은 人民들의 軍事費 負擔을 덜어주고 南北朝鮮 사이의 信賴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선에서 공고한 平和를 유지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될 것이다」라고 說明 했다.

또한 最近에는 1973年 3月 14日에 열린 南北調節委員會 第二次會議에서 北韓 副首相 朴成哲이 제의한 것으로서 그 內容을 要約하면 첫째, 南北間 武力증강 및 軍비경쟁을 中止할것, 둘째, 南北의 兵力을 相互 10만 또는 그 이하로 감축할것, 셋째, 駐韓外國軍을 철수 시킬것, 넷째, 外國으로 부터 무기를 도입하지 말것, 끝으로 다섯째, 이상의 문제를 解決하기 위해 南北間의 平和協定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北傀가 南北對話에서 軍縮問題를 들고 나온 것은 經濟交流와 社會文化 分野의 交流를 우선적으로 실시 하자고 제의한 韓國側 주장에 맞서 보겠다는 저의로 解釈 된다. 그러나 南北對話에 있어서 最近에는 軍事問題 5個項이 先決되지 않는 한 南北對話를 더 이상 진척 시키지 못하겠다고 고집 하므로서 事實상 南北對話를 교착상태에 빠지게 했다.

北傀는 今年 「유엔」총회에서 1954年부터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는 軍縮제의를 다시 한번 되풀이 하겠다고 하겠다. 그들은 國內外 情勢가 주로 平和共存時代에 접어들자 北傀도 平和 지향적이란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 特히 駐韓外國軍 撤收를 그들은 유일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軍縮案의 內容 가운데 特色을 지적 한다면 北傀는 軍縮의 対象을 南北韓의 正規軍의 規模와 그 장비에만 국한 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軍縮은 平和協定을 內容으로 규정하고 있는것이 特徵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軍縮에 關한 問題를 여러가지로 分析해 볼 수 있는데 歷史的으로 말해서 哲學者 「칸트」가 軍縮을 통한 世界平和를

제창한 바 있다. 同時에 蘇聯의 황제 「니콜라스」Ⅱ세도 1907년에 있었던 第一次 「헤이그」 만국平和會議에서 第一次의 目的으로 軍縮을 들고 나왔다. 軍縮이라고 말하는 것을 一見 할 때 平和에 對한 쉬운 憧憬이라고 보여진다. 國際社會에서 國家間의 紛爭의 平和的 解決은 紛爭 自体를 平和的으로 제거해 보자는 努力인데 反해 軍縮은 紛爭 自体를 상관없이 鬭爭의 도구를 박탈 함으로써 國家間의 紛爭을 예방해 보자는 方法이다. 軍縮을 뒷받침 하는 根本的인 哲學은 한 國家가 軍備를 비축하기 시작하면은 紛爭에 對한 自制力이 감소 되어 결국은 막강한 군대를 活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軍縮 理論은 根本的인 問題에 있어서 原因과 結果를 그리고 方法論과 目的論을 混頓하는 事故方式이라고 하는 事實은 否定할 수 없고 이에 對한 예리한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주요한 問題는 軍備政策을 國家間의 紛爭이 있을때 나타나는 現象이고 結果이지 그 紛爭의 原因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國際平和는 또는 平和라고 하는 問題는 政治的인 「잇슈」로서 軍縮이 平和로운 상황을 투영 해주는 福된 結果적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精確한 것으로서 平和를 달성하기 위한 效果的인 方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勿論 軍縮과 平和는 순환적인 問題로서 어느것이 先後 關係인지 식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만 戰爭의 防止는 이와같은 순환일에서 政治的 紛爭의 실마리를 공격하는 것이 軍備 問題를 解決하여 平和를 성취하는 方法보다 오히려 하다는 事實은 自明한 것이리라. 일찍이 1953年 英國議會에서 「윈스턴 처칠」은

다음과 같이 軍備에 對한 연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그는 말하기를 軍備의 비축은 궁극적으로 적을 전원 섬멸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게 되어 결국 누구도 살해하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그는 말하였다.

結論적으로 말해서 軍備縮少는 만병통치가 아니라는 사실은 明白하다.

Ⅶ . 맺 는 말

이번 總會에서는 南北對決의 轉換點이 될 可能性이 甚다. 紙上 보도에 따르면 現在 「페루」에서 개최된 非同盟國 外相會議에서 8月26日자로 北僞는 加入되고 韓國의 加入 申請이 否決 되었다 한다. 이 자체 만으로도 우리의 國際的 地位에 對한 큰 도전이 아닐 수 없거니와 8月初에 있었던 安全保障理事會에서의 韓國의 「유엔」加入 申請에 對한 議題 채택 마저 否決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今年 「유엔」총회에서 韓國側案에 對한 전망은 어둡기 만 하다. 이와같은 불행한 사태를 事前에 막기 위해 幕後交涉이 成功되어 「콘센서스 協定案」이라도 채택될 수 있다면 다행이라 하겠다. 特別히 今年에는 「아프리카」대륙의 새로운 3個 新生加入國은 모두 非同盟會議體制에 가까운 政治的 性向을 갖고 있어 우리에게는 매우 不利하다. 그뿐 아니라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共產化 되었으니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러한 反美的 態度는 美國 지도자들로 하여금 크게 반발하게 하였으나 이것은 相互作用으로 第三勢力圈의 반발도 만만치 않게 확대해 가는 것 같다.

韓國이 이와같은 國際情勢에 依해 계속 고립화 될 것 같으면 이것은 國際社會에 있어서 우리의 法統性에 크나큰 도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法統性에 對한 도전은 그 意味가 매우 重大하다. 장래에 예측할 수 있는 南北間의 對決이나 武力對決에 對해 國際社會는 편향된 평가를 할 우려가 있으며 어떠한 조작된 사태도

北에 有利한 事實로 고정事實化할 可能性이 있어 우리의 對外政策에 크게 차질을 가져올 可能性 마저 있다.

「유엔」총회에서 共産側決議案이 通過된다면 이것은 「유엔」外交思想 우리가 처음 經驗하는 고배가 된다. 그러나 「유엔」軍 사령부의 해체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安全保障理事會의 決定이 있어야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유엔」軍의 地位에 對해 變更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現在의 安保態勢에 對해서는 조금도 變함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韓國 스스로가 「유엔」軍 해체안을 수락한다고 해도 駐韓 美軍의 地位에는 何等 影響이 없다. 오직 「유엔」이란 國際軍이 韓國의 安保를 保障하고 뒷받침 하고 있다는 明分이 소멸되는 것이다. 그러나 國民이 느끼는 心理的인 問題에 對해서는 政府에서 特別히 設法한 배려를 하여 國民을 설득시키고 國論을 統一 선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韓國에 있어서 駐韓美軍의 存在가 非同盟國會議와 같은 第3世界圈에 대한 우리의 外交政策에는 커다란 逆機能的 變數로 나타나게 된다. 特定 自主獨立 國家가 外國과의 相互防衛條約을 체결하고 그 條約의 規定에 따라 外軍을 주둔 시키는 경우와 우리와는 與件이 좀 다른것 같다. 統一된 單一國家를 形成하기 위한 過程에서 平和를 保障 한다고는 하나 韓民族의 自主的 統一에 外勢가 障礙物이 된다는가 간섭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 國際社會에서는 그냥 받아 들이기 힘들다고 分析된다. 따라서 하루속히 自主國防態勢를 整備하는 것이 必要하며 이러한 뜻에서 最近

朴大統領의 外紙記者와의 會見에서 밝힌 自主國防의 決議는 매우 時期 적절한 政策 淸명이라고 볼 수 있다.

北傀는 계속해서 非同盟國들에게는 물론 對 西方外交에서도 그들의 위장된 平和主義를 힘써 부각시킬 것이다. 포괄적인 平和協定 체결을 제의한다던지 軍縮問題를 繼續 주장한다던지 나아가서는 핵무기의 使用을 금지하는 韓半島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政策을 피력한다던가 또한 協商 相對에서 韓國을 除外하여 우리를 國際적으로 궁지에 몰아 넣고 고립화 하는등 北傀는 그들의 最終 目標인 駐韓外國軍의 完全 撤収를 선동 획책할 것이다.

軍縮問題에 있어서도 그들의 위장평화공세의 手法은 더욱 선전적 政治心理戰的 次元에서 利用될 것이다. 軍備축소가 紛爭의 根本的 解決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는 自明한 事實에도 불구하고 軍備를 축소 하자고 제의하는데 對해 이것을 거부 한다는 것은 非人道的 이고 反平和的인 인상을 주게 된다는 事實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軍備縮小問題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研究를 통한 積極的 對應策이 마련되어야 한다. 會談이 장기화 되는것은 明分上 큰 損失이 없으며 또한 이 問題를 處理해 나가는 과정에서 돼해된 北傀 社會를 開放 시키고 北韓 동포에게 自由의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로 轉換 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궁극적 勝利는 保障된다.

끝으로 筆者는 國際社會에서 좀 더 長期的 外交政策 指針을 세워 國際社會에서 特히 非同盟第三世界圈에서 우리의 外交力量을 最大로 발휘하여 앞으로 닥쳐올 國難을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는 方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이 要望 된다.